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의안 번호	1560
----------	------

제출년월일 : 2007.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민간단체 및 개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보조금의 관리 및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나.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 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개 정 조 례 안 : 별첨

관계법령발취서 : 별첨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5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7. 3. 12. ~ 2007. 3. 31.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제6조 다음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조금의 관리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령서” 를 “보조금교부결정서” 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보조지령 전” 을 “보조금교부결정 전”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하여 개인에게 정액으로 사업비성 이외의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2.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완료 후 검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담 당 직위·성명	예산2담당 이희평
자	담당자 성명·전화	신옥희 (행정 280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u><신 설></u> 3. (생략)	제4조(보조대상)	----- ----- ----- ----- ----- -----	3.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u><신 설></u>	제6조의2(보조금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u>지령서</u> 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u>보조지령전</u> 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 ----- ----- ----- <u>보조금교부결정서</u> ----- ----- ② <u>보조금교부결정전</u> ----- -----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생략)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하여 개인에게 정액으로 사업비성 이외의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2.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완료 후 검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